

동반성장론 업무협약서(구매기업용) 개정대비표

1. 주요 개정 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<p data-bbox="376 389 741 475">동반성장론 업무협약서 (구매기업용)</p> <p data-bbox="91 572 336 604">주식회사 하나은행 앞</p> <p data-bbox="91 659 1025 895">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과 _____(이하 "구매기업"이라 하고, "은행"과 합쳐 "양 당사자"라 합니다)은 상호협력하여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은행의 「동반성장론」 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(이하 "이 협약"이라 합니다)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,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.</p> <p data-bbox="91 991 241 1059">제 1 조(목적) (기재생략)</p> <p data-bbox="91 1118 327 1145">제 2 조(용어의 정의)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 data-bbox="91 1203 1025 1481">①~③ (기재생략) ④ "1 차협력기업"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(용역 포함, 이하 같습니다)을 납품하는 거래기업 중 은행으로부터 이 협약과 관련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과 동반성장론(일반)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,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 없이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.</p>	<p data-bbox="1305 389 1671 475">동반성장론 업무협약서 (구매기업용)</p> <p data-bbox="1048 572 1115 604">(삭제)</p> <p data-bbox="1048 659 1933 938">주식회사 하나은행(이하 "은행"이라 합니다)과 _____(이하 "구매기업"이라 하고, "은행"과 합쳐 "양 당사자"라 합니다)은 상호협력하여 구매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납품대금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은행의 「동반성장론」 결제제도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(이하 "이 협약"이라 합니다)을 체결하고 이 협약에 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」,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및 「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」과 금융결제원의 「B2B 업무규약」 및 「동 시행세칙」 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.</p> <p data-bbox="1048 991 1198 1059">제 1 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</p> <p data-bbox="1048 1118 1276 1145">제 2 조(용어의 정의)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 data-bbox="1048 1203 1933 1481">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"1 차협력기업"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(용역 포함, 이하 같습니다)을 납품하는 거래기업 중 은행으로부터 이 협약과 관련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과 동반성장론(일반) 관련 대출약정을 은행과 체결한 기업과 채권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.</p>	<p data-bbox="1955 759 2145 831">준용 약관 추가 등 문구 수정</p> <p data-bbox="1955 1366 2145 1437">용어의 정의 수정</p>

<p>⑤“동반협력기업”이라 함은 1 차협력기업과 거래하는 2 차협력기업, 2 차협력기업과 거래하는 3 차협력기업, 3 차협력기업과 거래하는 4 차협력기업중 상위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과 동반성장론(협력)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, 외상매출채권 양도계약 없이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.</p> <p>⑥~⑩ (기재생략)</p> <p>⑪ “MP(Market Place)”라 함은 은행과 별도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협력기업간 납품정보 및 결제정보 등을 중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사이트 또는 동 사업자를 말하며, 협력기업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MP 사이트에서 상생매출채권의 발행, 취소, 조회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, 구매기업은 MP 사이트에서 발행채권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</p>	<p>⑤“동반협력기업”이라 함은 1 차협력기업과 거래하는 2 차협력기업, 2 차협력기업과 거래하는 3 차협력기업, 3 차협력기업과 거래하는 4 차협력기업중 상위기업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거나 장래 가지게 될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과 동반성장론(협력) 관련 대출약정을 은행과 체결한 기업과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이용약정을 체결한 기업을 말합니다.</p> <p>⑥~⑩ (현행과 같음)</p> <p>⑪ “MP(Market Place)”라 함은 은행과 별도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협력기업간 납품정보 및 결제정보 등을 중계 할 수 있도록 구축한 인터넷사이트 또는 동 사업자를 말하며, 협력기업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또는 상위기업이 발행한 상생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MP 사이트에서 상생매출채권의 발행, 취소, 조회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, 구매기업은 MP 사이트에서 발행채권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</p>	<p>용어의 정의 수정</p> <p>용어의 정의 수정</p>
<p>제 3 조(업무의 방법)</p> <p>①~④ (기재생략)</p> <p>⑤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채권대금이 모두 입금되었으나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상생매출채권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대금에 대하여는 「대.중소기업협력재단」 명의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합니다.</p>	<p>제 3 조(업무의 방법)</p> <p>①~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채권대금이 모두 입금되었으나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하여 발행된 상생매출채권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권대금에 대하여는 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」 명의의 에스크로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합니다.</p>	<p>재단명 수정</p>
<p>제 4 조(외상매출채권의 양도 및 발행, 관리)</p> <p>①(기재생략)</p> <p>②(외상매출채권의 양도)</p> <p>은행이 1 차협력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, 은행은 1 차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, 1 차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합니다. 이에 대해 구매기업은 제 4 항에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</p> <p>(신설)</p>	<p>제 4 조(외상매출채권의 양도 및 발행, 관리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외상매출채권의 양도 및 양도승낙)</p> <p>1. 은행이 1 차협력기업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, 은행은 1 차협력기업으로 하여금 그 양도사실을 지체없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하도록 하거나, 1 차협력기업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직접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구매기업에게 통지합니다. 이에 대해 구매기업은 제 4 항에 명시된 사유 등이 없는 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</p> <p>2. 구매기업과 1 차협력기업 사이에 체결한 물품 납품 계약 등에서</p>	<p>항 제목 수정 호 번호 신설</p> <p>법무법인 검토</p>

③(기재생략)

④(기재생략)

1. **구매기업** 1 차협력기업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**주장하는** 경우
2.~6. (기재생략)

⑤ (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의 관리 및 통지)

구매기업은 은행이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성실히 관리하여 은행의 1 차협력기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보전에 적극 협조하고, 1 차협력기업의 채권자가 위 외상매출채권을 **(가)압류하였다거나** 1 차협력기업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위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은행이 1 차협력기업으로부터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.

⑥ (기재생략)

제 5 조(외상매출채권의 결제)

① **구매기업은 이 협약에 따라 은행에게 전산으로 통보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그 명세에 기재된 만기일에 은행의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그 명세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. (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로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)**

예금주	예금주 사업자번호	계좌번호	비 고
			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

② **은행은 만기도래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별도의 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다음 순서에 따라 결제처리하기로 합니다.**
1. **당일만기대출 실행금액을 우선적으로 상환**

1 차협력기업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, 구매기업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이용과 관련하여 1 차 협력기업의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은행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.

③(현행과 같음)

④(현행과 같음)

1. 1 차협력기업이 당시까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**인정하는** 경우
2.~6. (현행과 같음)

⑤ (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의 관리 및 통지)

구매기업은 은행이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성실히 관리하여 은행의 1 차협력기업에 대한 대출금 채권보전에 적극 협조하고, 1 차협력기업의 채권자가 위 외상매출채권을 **(가)압류하였거나** 1 차협력기업으로부터 제 3 자에게 위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등 은행이 1 차협력기업으로부터 양도받은 외상매출채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기로 합니다.

⑥ (기재생략)

제 5 조(외상매출채권의 결제)

① **구매기업이 이 협약에 따라 은행에게 통보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는 구매기업 및 협력기업 간의 법률관계와 무관하게,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의 변제 의무를 부담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며, 그 명세에 기재된 만기일에 은행의 영업시간 이내에 아래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계좌로 그 명세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입금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.**

(※하나은행에 개설한 본인명의로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기재합니다.)

예금주	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	계좌번호	비 고
			법인의 본지사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예금주 사업자번호 기재

② **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,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**

의견 반영을 위한 호 신설

용어 수정

용어수정

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한 문구 수정

항 체상, 체하 및 업무절차에 따른 문구 수정

<p>2. 발행일이 빠른 외상매출채권순으로 결제</p> <p>3. 발행일이 동일할 경우 접수번호(은행이 채권발행 당시 부여한 채권번호)순으로 결제</p> <p>4. 상생매출채권의 결제는 발행의 근거가 되는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순서에 따라 처리</p> <p>③ 협력기업의 동반성장론 상환 및 외상매출채권의 만기 결제 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반성장론(협력)대출의 중도상환에 따르는 환출이자는 상생매출채권 발행기업에게 지급됩니다.</p> <p>④ 협력기업에게 지급할 외상매출채권 대금 중 제 3 조 5 항에 따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협력기업과의 약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며, 구매기업은 에스크로 예치자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.</p> <p>⑤ 결제계좌는 전용계좌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, 부득이한 사유로 통장예금자동대출 계좌나 당좌대출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경우, 영업시간 중 구매대금 결제로 인하여 일중대출이 발생하더라도 대출취급 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</p> <p>⑥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처리 중 결제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제 2 항에서 정한 결제순서에 해당하는 건별 외상매출채권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며 결제계좌 잔액보다 작은 채권이 없을 경우에는 결제되지 않습니다.</p>	<p>및 이자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.</p> <p>③ 만기일이 도래된 외상매출채권 대금은 별도의 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동반성장론 취급 분을 우선 변제하고, 미취급 분은 접수일자 순,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④ 협력기업의 동반성장론 신청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은행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입금 받은 채권대금을 그 만기일에 협력기업에게 지급처리하기로 합니다.</p> <p>⑤ 은행은 외상매출채권 대금을 만기수령하기 위한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그 외상매출채권 처리에 관한 책임이 구매기업에게 있기로 하는 조건으로 지급대행업무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.</p> <p>⑥ 만기일에 구매기업이 제 1 항에서 약정한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협력기업의 매출채권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 3 항에서 정한 순서와 방법에 의하여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합니다.</p>	<p>상동</p> <p>상동</p> <p>상동</p> <p>상동</p>
<p>(신설)</p>	<p>⑦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처리 중 결제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이 제 3 항에서 정한 결제순서에 해당하는 건 별 외상매출채권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며 결제계좌 잔액보다 금액이 적은 채권이 없을 경우에는 결제되지 않습니다.</p>	<p>항 신설 및 상동</p>
<p>(신설)</p>	<p>⑧ 협력기업의 동반성장론 상환 및 외상매출채권의 만기 결제 시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반성장론(협력)대출의 중도상환에 따르는 환출이자는 상생매출채권 발행기업에게 지급됩니다.</p>	<p>항 신설 및 상동</p>
<p>(신설)</p>	<p>⑨ 협력기업에게 지급할 외상매출채권 대금 중 제 3 조 5 항에 따라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자금은 협력기업과의 약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며, 구매기업은 에스크로 예치자금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.</p>	<p>항 신설 및 상동</p>
<p>제 6 조(외상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) 구매기업이 제 4 조 3 항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 명세를 전산으로 통보한</p>	<p>제 6 조(외상매출채권의 취소 및 변경) 구매기업이 제 4 조 3 항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 명세를 전산으로</p>	

경우,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1 차협력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하자, 전산조작오류, 기타 사유를 이유로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. **그러나**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일부라도 협력기업에게 동반성장론을 실행한 경우나 상생매출채권이 발행 된 경우에는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, 통보 당시의 외상매출채권 명세에 따른 금액을 결제하기로 합니다.

제 7 조(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,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)

①(기재생략)

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	금	원
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	금	원
이자율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고정금리	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연()%
	<input type="checkbox"/> 변동금리	기준금리() + ()%
지연배상금률	지연배상금률은 제 7 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아래의 연체가산율을 더하여 결정합니다. 단, 최고지연배상금률은 연 %로 합니다.	
	연체기간이 ()개월 이하인 경우 : 연 %	
	연체기간이 ()개월 이하인 경우 : 연 %	
	연체기간이 ()개월 초과인 경우 : 연 %	
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	1 년을 365 일(윤년은 366 일)로 보고 1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	
변 제 방 법	개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.	

※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결제계좌 입금분은 당일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② (기재생략)

③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동반성장론 대출을 취급한 경우, **만기일에**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대출을 실행하여 협력기업의 대출을 상환합니다.

통보한 경우,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구매기업은 1 차협력기업으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의 하자, 전산조작오류, 기타 사유를 이유로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은행에게 외상매출채권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기로 합니다. **다만**,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전산통보를 받고 일부라도 협력기업에게 동반성장론을 실행한 경우나 상생매출채권이 발행 된 경우에는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, 통보 당시의 외상매출채권 명세에 따른 금액을 결제하기로 합니다.

제 7 조(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,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)

①(현행과 같음)

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	금	원
협력기업에 대한 총 대출한도	금	원
이자율 등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준금리() + 가산금리() %	
	<input type="checkbox"/>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연()%	
지연배상금률	지연배상금률은 제 7 조에 의해 결정된 이자율에 연체가산율 ()%를 더하여 결정하며, 최고 연()%로 합니다.	
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	1 년을 365 일(윤년은 366 일)로 보고 1 일 단위로 계산합니다.	
변 제 방 법	개별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변제하기로 합니다.	

※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결제계좌 입금분은 당일 중 변제처리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②(현행과 같음)

③구매기업으로부터 통보받은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기초로 하여 은행이 협력기업에게 동반성장론 대출을 취급한 경우, **명세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** 구매기업 명의의 당일만기대출을 실행하여 협력기업의 대출을 상환합니다.

용어 수정

이자율 적용 기준 반영
여신거래약정서 (기업용) 개정에 따른 문구 변경

문구 수정

<p>④~⑤ (기재생략)</p> <p>제 8 조(거래조건) ~ 제 10 조(대출의 취급 및 제한) (기재생략)</p> <p>제 11 조(한도 감액, 정지) ① (기재생략) 1.~ 2. (기재생략) 3.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에 의하여 거래 제한될 때</p> <p>② (기재생략)</p> <p>제 12 조(정보제공의 동의) (기재생략)</p> <p>제 13 조(협약서 효력) ①~②(기재생략) ③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의해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협약에 의해 이미 통지한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의 결제일까지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④(기재생략)</p> <p>제 15 조 (기타 특약사항) (기재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>(은행) (구매기업) 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(인) 기업명 : _____(인) 주 소 : 주 소 :</p>	<p>④~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8 조(거래조건) ~ 제 10 조(대출의 취급 및 제한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1 조(한도 감액, 정지) ① (현행과 같음) 1.~ 2. (현행과 같음) 3. 「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」 제 11 조의 2 에 의하여 거래 제한될 때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2 조(정보제공의 동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3 조(협약서 효력) ①~②(현행과 같음) ③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의해 이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구매기업이 이 협약에 의해 이미 통지한 외상매출채권 및 이를 근거로 하여 발행된 상생매출채권에 대하여는 해당 채권의 실제 지급이 완료되는 날까지 이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니다.</p> <p>④(현행과 같음)</p> <p>제 15 조 (기타 특약사항)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년 월 일</p> <p>(은행) (구매기업) 주식회사 하나은행 _____(인) 기업명 : _____(인) 주 소 : 주 소 :</p>	<p>준용 약관 기재</p> <p>법무법인 검토 의견 반영한 문 구 수정</p>
---	--	--

2. 개정 시행일 : 2019년 5월 30일

3.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: 적용